

차별위 조정안 [교육부 의견]	장애계 조정안
초·중등교육법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,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,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수 및 당해 교육기관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. 교육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2. “교육책임자”라 함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. ※ 교육부 : 11. “교육기관”의 정의에서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삭제 ※ 교육부 : 12. “교육책임자”라 함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의한 보육시설, 유아교육법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. ※ 여성가족부 : 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” 삭제	초·중등교육법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,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,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수 및 당해 교육기관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. 교육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2. “교육책임자”라 함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.
13. “정보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. 가. “전자정보”라 함은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. 단, 이 경우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“자연인 및 법인”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나. “비전자정보”라 함은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, 문자, 수화, 점자, 몸짓,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, 그 생산·획득·가공·보유주체가 자연인·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. 다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를 말하며, 그 처리방식이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인가의 여부와 그 획득·가공·처리·보유주체가 자연인·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.	13. “정보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. 가. “전자정보”라 함은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. 단, 이 경우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“자연인 및 법인”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나. “비전자정보”라 함은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, 문자, 수화, 점자, 몸짓,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, 그 생산·획득·가공·보유주체가 자연인·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. 다. “개인정보”라 함은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를 말하며, 그 처리방식이 광 또는 전자적 방식인가의 여부와 그 획득·가공·처리·보유주체가 자연인·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.
14. “의사소통”이라 함은 음성, 문자, 수화, 점자, 몸짓,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	14. “의사소통”이라 함은 음성, 문자, 수화, 점자, 몸짓,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

차별위 조정안 [교육부 의견]	장애계 조정안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자의 비용부담방식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사용자 및 관계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	사용자가 부담하되 사용자의 비용부담방식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사용자 및 관계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절 교육	
제12조(차별금지)	제10조(차별금지)
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,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	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,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3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3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이동,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제약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	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이동,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제약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·실습, 현장견학,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, 배제,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·실습, 현장견학,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, 배제,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,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	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,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 등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경제적, 정신적 부담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. ※ 교육부 : “정신적 부담”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,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삭제	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경제적, 정신적 부담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.
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,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,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	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,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,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

차별위 조정안 [교육부 의견]	장애계 조정안
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※ 교육부 :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. 1. 시·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화통역, 문자통역(속기), 점자 자료, 자막, 큰 문자 자료, 화면낭독·확대프로그램, 보청기기, 무지점자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재활보조공학장비 등 의사소통 수단 2.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교육보조인력의 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보조인력을 배치 3.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확대 독서기, 보청기기, 높낮이 조절용 책상, 각종 보완·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안내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② 당해 교육 책임자는 교내에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 할 수 있다.	
제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	제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
제14조(차별금지) ①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 및 시설주관기관(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이 법 제4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장애인이 <u>접근·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</u>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※ 복지부 :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음	제12조(차별금지) ①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 및 시설주관기관(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이 법 제4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장애인이 <u>접근·이용함에 있어</u>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③ 시설주 및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이 동반한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을 시설에 들여오거나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<u>피난·대피시설</u>을 마련하지 않거나 피난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 ③ 시설주 및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이 동반한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을 시설에 들여오거나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